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81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최혁진 · 정혜경 · 임미애
김종민 · 송재봉 · 전진숙
황운하 · 조계원 · 손 솔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특정 지역 출신이 의대·로스쿨 등 전문직과 고위 공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

더욱이 선발된 지역인재가 학위 취득 또는 경력 축적 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후 수도권 본사로의 전보를 요구하거나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지방 의대 졸업생의 상당수가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하여 지방 의료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누수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에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기여하도록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5조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을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이 경우 같이 거주하는 부모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제12조제4항 중 “국회에”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

기관등은”으로, “일정비율”을 “100분의 35”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채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도권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등의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이”로, “공공기관은”을 “공공기관등은”으로, “35”를 “50”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역인재의 의무근무)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지역인재는 채용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이하 “의무근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의무근무 기간 동안 지역인재를 수도권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지역인재 본인의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전보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봉사, 멘토링, 산학협력 활동 등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인사 고과 및 승진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의무근무 및 지역사회

회 기여 이행 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역인재의 의무근무 및 전보, 제4항에 따른 실태 조사·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지역인재 채용 실적 평가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이행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부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을 요구받은 부진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부진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개선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등의 장에 대한 경고 또는 해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시 감점
3. 다음 연도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진기관의 판단 기준, 조치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지역균형인재의 정주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은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라 의무근무 또는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2. 주택의 매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이자 보전

3. 사택 또는 기숙사의 제공

4.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 감면

5. 그 밖에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주 지원의 구체적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대학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대학의”로, “간호대학 등”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문직 양성과정”이라 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를 “지역인재의”로, “일정비율”을 “100분 5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지방대학의 장은 전문직 양성과정의 입학자 중 지역인재의”로,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를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문직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지방대학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지역인재 선발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지방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직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2.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인원 수의 2배 범위 내에서의 다음 연도의 입학정원 감축
 3. 해당 대학에 대한 각종 평가 시 불이익 부여
- ⑨ 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선발 방법·절차 및 제8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문직 양성과정 지역인재의 의무복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무복무 장학생(이하 “의무복무학생”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의무복무학생은 의사·치과의사·한 의사·약사 면허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의무복무기간에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기간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실무수습 기간을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산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의무복무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무복무학생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스스로 자격을 포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학생이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 내역, 의무복무 관리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교육격차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이하 “교육격차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격차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정책
2.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에 관한 정책
3.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지역 간 교육 격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격차영향평가 결과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격차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인재 자격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학교,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특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의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1. 시행 1년차: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35 이상(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이상)
2. 시행 2년차: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40 이상(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3. 시행 3년차 이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 이상)

제4조(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의무근무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의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근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 1년차 채용된 경우: 5년
2. 시행 2년차 채용된 경우: 7년
3. 시행 3년차 이후 채용된 경우: 10년

제5조(전문직 양성과정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특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직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지방대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

발하여야 한다.

1. 시행 1년차: 입학정원의 100분의 35 이상
2. 시행 2년차: 입학정원의 100분의 40 이상
3. 시행 3년차 이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 이상

제6조(전문직 양성과정 지역인재 의무복무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직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지방대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의무복무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시행 1년차: 지역인재 선발 인원의 100분의 30 이상
2. 시행 2년차: 지역인재 선발 인원의 100분의 40 이상
3. 시행 3년차 이후: 지역인재 선발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 인재”라 한다)란 <u>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u>	2. ----- ----- <u>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u> ----- -----.
<u><신 설></u>	<u>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 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 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u>
<u><신 설></u>	<u>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수도권이 아닌 지 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 주한 사람. 이 경우 같이 거주하는 부모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u>
<u><신 설></u>	<u>다.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 방대학을 졸업한 사람</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① ~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에-----.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등은-----
-----100분의 35-----
-----채용하여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등의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에-----
-----공공기관등은-----
-----50-----
-----. <단서 삭제>

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 설>

<삭 제>

<삭 제>

제13조의2(지역인재의 의무근무)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지역인재는 채용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이하 “의무 근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의무 근무 기간 동안 지역인재를 수도권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지역인재 본인의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전보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 멘토링, 산학협력 활동 등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인사 고과 및 승진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

<신 설>

다.

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의무근무 및 지역사회 기여 이행 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역인재의 의무근무 및 전보, 제4항에 따른 실태 조사·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지역인재 채용 실적 평가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이행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부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을 요구받은 부진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신 설>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부진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개선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등의 장에 대한 경고 또는 해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시 감점

3. 다음 연도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진기관의 판단 기준, 조치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지역균형인재의 정주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은 제13조의2

	<u>및 제15조의2에 따라 의무근무 또는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u> <u>2. 주택의 매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이자 보전</u> <u>3. 사택 또는 기숙사의 제공</u> <u>4.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 감면</u> <u>5. 그 밖에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정주 지원의 구체적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생 략)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방대학의</u>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②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대학의</u> -----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
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
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
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
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
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
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문직 양성과정”이라 한다)----

-----지역인재의-----

-----100분 50-----

<삭 제>

<삭 제>

<삭 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지방대학의 장은 전문직 양성과정의 입학자 중 지역인재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전문직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지방대학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지역인재 선발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지방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직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2.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인원 수의 2배 범위 내에서의 다음 연도의 입학정원 감축

3. 해당 대학에 대한 각종 평가 시 불이익 부여

⑨ 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선발 방법·절차 및 제8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신 설>

정한다.

제15조의2(전문직 양성과정 지역
인재의 의무복무 등)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2
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역의무복무 장학생(이하
“의무복무학생”이라 한다)을 선
발하여, 입학금·수업료·기숙
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의무복무학생은 의사·치과의
사·한의사·약사 면허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
이라 한다) 동안 해당 지방대
학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
치도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또는 시·도지사
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의무
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의무복무기간에는 「전공의

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기간 또는 「변호사법」에 따
른 실무수습 기간을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산
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의무복무학생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무복무학생 선정 취소 사
유가 발생하거나 스스로 자격
을 포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무
부장관은 의무복무학생이 제2
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 또
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의무복

<신 설>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 내역, 의무복무 관리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교육격차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이하 “교육격차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격차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정책
2.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에 관한 정책
3.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지역 간 교육 격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격차영향평가 결과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격차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